

# 조선후기 과거 응시의 대중화

- 응시 자격 문제를 중심으로 -

박현순

## 머리말

조선후기에는 과거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역적의 후예이자 '상놈'인 白凡 金九도 과거에 응시할 만큼 응시 계층도 확대되었다. 응시자 수의 증가와 응시 계층의 확대는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조선후기는 점차 과거 응시가 대중화되는 추세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이상은 학교를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과거를 통해 그들을 선발하여 관료로 등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개국 직후부터 관학 교육과 과거를 연계시켜 학교에서의 수학을 전제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런 원칙이 항상 엄밀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관학의 진흥과 과거 응시 자격 문제를 연계시켜 파악하였다. 그 구체적인 제도가 圓點이나 학교의 儒生案을 근거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sup>1</sup>

결과적으로 보면 관학 교육은 날로 허소화된 반면 과거 응시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학교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이 폐기된 것일까?

과거 응시자가 늘어나고 응시 계층이 확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였으며, 시기마다 일차적인 변수의 성격도 달랐다. 17세기 생원·진사시 응시자의 증가는 軍役 문제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에 비해 庭試나 謁聖試 응시자 증가는 출제 경향의 단순화와 上京 응시 증가가 주요한 변수가 되었다.<sup>2</sup> 본 발표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그 변수의 하나로 응시 자격 부여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sup>1</sup> 官學을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은 크게 주목되지 못했다. 그러나 차미희는 16세기 圓點과 書徒를 통한 응시 자격 부여, 박현순은 효종 5년 학교 入錄을 통한 科擧都目 발급 제한, 김경용은 명종 8년 「科擧事目」에 명시된 관학 입학자의 응시 자격 부여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 차미희, 1999, 『朝鮮時代 文科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 박현순, 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史學研究』 93, 한국사학회(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科擧』 소명출판 재수록) ; 김경용, 2010, 「조선후기 과거제도 정비 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교육사학연구』 20-1, 교육사학회

<sup>2</sup> 박현순, 위의 책.

학교를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할 때 그 근거는 圓點처럼 수학 일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유생안과 같은 학적을 근거로 할 수도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국가에서 어떤 근거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는지 살펴 볼 것이다. 이어 학적의 주요 근거가 되는 鄕校의 儒生案을 통해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과거도 목의 발급을 통해 최종적으로 과거 응시자들일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 I. 학교를 통한 과거 응시 자격 부여

### 1. 圓點과 書徒를 통한 자격 부여

조선시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주로 신분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법제상으로는 첩자손을 제외한 양인은 누구나 과거 응시가 허용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예외적으로 서얼의 경우는 제한이 있었으나 16세기 후반부터 許通을 통한 과거 응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여 숙종 22년(1696)에 이르러 모든 서얼의 과거 응시가 허용되기에 이르렀다.<sup>3</sup>

과거 응시가 허용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 이래 국가에서는 학교를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입학과 학교에서의 수학 여부가 실질적으로 과거 응시 가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관학에서의 수학과 과거 응시 자격을 연계시킨 단적인 예는 성균관 유생들에게 圓點을 부여하고, 일정 이상의 원점을 획득한 경우에만 문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미 태종대부터 생원·진사는 성균관에서 원점 300점을 획득한 후에만 문과 초시의 館試나 향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sup>4</sup>

생원·진사에게 일괄적으로 원점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생원·진사로 成衆官이 되거나 지방의 訓導로 나간 자나 지방에 거주하는 자들이 식년시 주기인 3년 내에 300일을 성균관에서 머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이 만들어져 세종대부터 부모가 연로한 경우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지방의 교수나 훈도로 나간 경우는 상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종관은 근무 때문에 居齋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점 없이도 관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sup>5</sup>

그러나 세조대부터는 다시 원점 적용을 강화하여 成衆官은 100점에서 150점을 채워야 館試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모가 연로한 자는 원점은 요구하지 않았으나

<sup>3</sup> 宋俊浩, 1970, 『李朝生員進士試의 研究』 대한민국 국회 ; 차미희, 앞의 책, 49-54쪽

<sup>4</sup> 『태종실록』 권21, 태종 11년 6월 4일(계사) ;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기사)

<sup>5</sup>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1422) 12월 23일(을사) ; 『세종실록』 권41, 세종 10년(1428) 8월 21일(경자) ;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1459) 10월 25일(계유)

관시를 제외한 한성시와 향시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sup> 그리고, 중종대에 생원·진사의 한성시·향시 응시 기준을 원점 150점으로 조정하면서,<sup>7</sup> 최종적으로 문과 초시 중 관시는 300점, 한성시·향시는 150점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sup>8</sup> 비록 조선후기에는 식년시 응시자의 감소로 원점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성균관에 거재하며 일정 이상의 원점을 얻어야만 관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은 견지되었다.<sup>9</sup> 관시를 시행하지 않는 別試의 경우 시험 때마다 기준이 달랐으나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원점이나 居齋 여부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sup>10</sup>

四學 유생의 경우 성종 8년(1477) 별시 때 원점을 적용하도록 한 이래<sup>11</sup>, 연산군대에는 향시와 한성시 응시에도 원점을 요구하였다.<sup>12</sup> 그리고 중종 11년(1516)에는 경외의 유학도 원점 200점을 얻어야만 향시와 한성시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생원·진사에게만 요구되던 원점이 경외의 모든 유생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당시에 결정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京外の 유학은 圓點 200점을 채운 자를 향시와 한성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 성균관의 寄齋生과 四學의 유생은 원점 수를 매월 예조에 보고하고, 교생의 원점 수는 수령이 매월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置簿한다. 과거에 응시할 때 京中은 예조가 置簿를 상고하여 錄名하고, 外方은 陳省과 감사가 치부한 원점 수를 상고하여 응시를 허락한다.<sup>13</sup>

그러나 강제적인 원점 적용은 곧 난항에 부딪혔다. 거재는 형식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에서는 공궤 문제로 사실상 원점 획득을 지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방의 사족자제들은 향교 입학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이었다.<sup>14</sup>

<sup>6</sup> 『세조실록』 권18, 세조 5년(1459) 10월 25일(계유) ; 『성종실록』 권11, 성종 2년(1471) 8월 19일(기미) ;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18일(신사)

<sup>7</sup> 『대전후속록』 諸科 “生員進士 滿圓點一百五十者 雖無屬處 許赴鄉漢城試”

<sup>8</sup> 『선조실록』 권62, 선조 28년 4월 25일(정묘) ; 『승정원일기』 현종 9년 8월 6일(임신)

<sup>9</sup> 『속대전』 禮典 諸科 “居齋儒生圓點 赴食堂兩時, 爲一點 泮製則準五十點, 館試則準三百點者許赴 雖未準點, 應赴館試者甚少則五十點以上旨許赴”

<sup>10</sup> 차미희, 앞의 책

<sup>11</sup> 『성종실록』 권86, 성종 8년 11월 18일(신사)

<sup>12</sup> 『연산군일기』 권48, 연산군 9년(1503) 2월 18일(을묘) ;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1516) 5월 8일(무자) ;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1516) 5월 30일(경술)

<sup>13</sup> 『중종실록』 권25, 중종 11년 6월 9일(기미) “議政府啓曰 京外幼學 圓點二百者 許赴鄉·漢城試 成均館寄齋·四學儒生等 圓點數則逐月報禮曹 校生圓點數則各其守令每月報觀察使置簿 赴學時 京中則禮曹考置簿數錄名 外方則考陳省及監司置簿圓點數許赴”

<sup>14</sup> 『중종실록』 권44, 중종 17년(1522) 4월 24일(경자) ; 『중종실록』 권53, 중종 20년(1525) 2월 13일(임인)

중종 29년(1534)에는 학업의 내실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매일 독서하는 진도를 기록하는 晝徒를 작성하여 수시로 평가를 시행한다는 晝徒의 법을 성균관에 도입하는 한편 수업에 출석한 자에게만 별시 응시를 허용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sup>15</sup> 이듬해에는 경외 유학에게도 서도의 법을 확대 적용하였다.<sup>16</sup> 관학 교육을 진흥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과거 응시에 보다 강화된 수학 경력을 요구한 것이다.

중종대까지 시행된 원점과 서도의 법은 就學과 일정 기간의 수업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비록 사학과 지방 유생들의 원점이나 서도 규정은 그리 엄밀하게 준행되지 못하였지만 국가가 관학 수학 여부를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 學籍을 통한 자격 부여

명종 8년(1553) 尹春年이 주도한 과거제 개혁은 과거 응시 자격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 왔다. 과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四學이나 鄉校에 적을 두고, 처음 과거에 응시할 때 『중용』과 『대학』의 背講 시험을 통과해야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학교 입속자에게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규정은 명종 8년의 「과거사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신해년(1551) 4월 承傳 내에 ‘과거에 응시하는 중외의 유생을 武舉人이 屬處가 있어야 응시를 허락하는 예를 따라 京中의 응시자는 모두 四學에 속하게 하고, 그 四祖를 기록하여 1건은 예조에 두고, 1건은 담당기관에 두고, 과거가 있으면 그 적을 상고하여 응시를 허락한다. … 외방도 1건은 예조에 보내고 1건은 監司에 두고 향시, 별시, 회시 때 상고하게 한다.’고 하였다. 위의 승전과 같이 學籍의 법식을 신명하여 京中은 사학에서 강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成籍을 상세히 살펴 본조에 보고하게 하여 본조에서 모두 講所에 보내고, 외방은 각관에서 경중 사학의 예를 따라 成籍하여 미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여 각 都會에 나누어 보낸다.”<sup>17</sup>

이 사목은 수학의 과정보다는 학적과 시험을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는 데 특징

<sup>15</sup> 『중종실록』 권78, 중종 29년(1534) 11월 9일(신미)

<sup>16</sup> 『중종실록』 권180, 중종 30년(1535) 12월 11일(정유)

<sup>17</sup> 『科擧事目』 嘉靖 32년(1553) 9월 일 「申明前後科擧事目」 “辛亥年四月承傳內節該凡中外赴試儒生乙依武舉人有屬處許赴之例 京中赴試者皆令屬于四學籍其四祖 一件置于禮曹 一件置于其司 … 外方段置 一件送于禮曹 一件置于監司 道鄉試別試會試試 并令相考亦爲白昆右良承傳貌如申明學籍之令式 爲京則四學乙用良開講前 詳悉成籍 報本朝爲白良在等 曹以都送講所 外則各官依京中四學例成籍 前期報監司 分送各都會”

이 있다. 이 시점은 사족 자제들이 향교 입학을 꺼리고, 국가에서도 관학을 통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계속되던 때였다.<sup>18</sup> 서원이 건립된 것도 이즈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관학을 통한 수학을 강제하기보다 수학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학적과 그 성취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선조 15년(1582) 李珥가 입안한 「學校事目」을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여기서는 다시 관학 교육의 부활을 꾀하여 생원·진사를 제외한 모든 유생은 성균관 하재나 사학, 향교에 적을 두게 할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수학하게 하고, 평소의 행의를 평가하여 과거 응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sup>19</sup>

임진왜란 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대신 인조 원년(1623) 생원·진사시 초시 응시자에게 『소학』을 臨講하여 통과자에게만 응시를 허용하는 照訖講制度를 도입하였다. 학교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비 시험을 통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효종 5년(1654) 4월에 이르러 다시 학교에 적을 두지 않는 유생은 과거 응시를 불허한다는 원칙을 다시 천명하였다.<sup>20</sup> 이러한 원칙은 현종·숙종대에도 재차 확인되었다.<sup>21</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초기부터 국가는 관학을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중종대까지는 圓點과 晝徒로 표현되는 居齋 여부를 통해 그 자격을 부여하려 한 반면 명종대 이후에는 학적 여부와 照訖講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려 하였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가 사학이나 지방 향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지속적으로 학교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은 일관된 것이었다.

## II. 鄕校 儒生案의 구성

### 1. 校生에서 靑衿儒生까지

국가가 학교를 통해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려고 할 때는 입학 자격과 儒生案의 입력 기준이 과거 응시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래에서는 향교 儒生案의 작성 방식을 통하여 과거 응시자의 모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22</sup>

<sup>18</sup> 『중종실록』 중종 31년 1월 11일(정묘)

<sup>19</sup> 이이, 『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1582)

<sup>20</sup> 『승정원일기』 효종 5년 4월 30일 (기축);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207쪽, 예안향교 「別儒草案」

<sup>21</sup> 『승정원일기』 현종 11년 9월 11일(을축); 『승정원일기』 숙종 원년 12월 25일(무인)

<sup>22</sup> 향교에 소속된 교생의 명부는 校案, 校生案, 校儒案, 儒案, 儒生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다. 본

향교에 소속된 生徒는 校生으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중종 33년(1538) 전라도 관찰사 金正國이 열읍을 순시하며 유생들의 강경과 제술을 점검할 때 참여한 유생 중에는 교생 외에 業儒도 있었다.<sup>23</sup>

업유는 16세기에 자주 사용된 용어로 儒業에 종사하는 사족자제들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특히 碑誌類 문장에 자주 등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사족자제들이 '교생'이 되는 것을 기피하여 스스로 '業儒'라고 칭하며 향교에 입속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sup>24</sup> 그러나 위의 사례를 보면 업유가 완전히 관학에서 이탈된 존재인지 의문이 든다.

李文樾(1494-1567)의 『黥齋日記』를 보면 성주목에서는 '校案'과 '業儒案'을 나누어 작성하고 향교 내에 業儒를 위한 별도의 有司인 '業儒堂長'까지 두고 있었다.<sup>25</sup> 이 때는 명종 8년(1553) 학교 입학자에게만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事目이 반포된 전후였다. 따라서 과거사목에서 기준으로 삼은 학적은 교안과 업유안을 포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에서는 업유의 존재를 파악하였을 뿐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정책 시행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柳希春의 『眉巖日記』에도 선조 4년(1571) 충군을 위해 교생, 업유, 동몽을 대상으로 考講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sup>26</sup> 그러나 趙憲은 업유를 '私自讀書之類'로 지적하고, 이들을 향교에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7</sup> 이러한 주장은 성주에서 업유안을 작성한 것과는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향교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때로는 학교에 적을 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시적으로 학교에서 수학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관료들이 수학을 중시하였고, 선조대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헌의 주장은 수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업유는 유생안에는 올라 있지만 향교에서 공부하지 않는 존재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명종 8년 국가에서 居齋가 아닌 學籍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도 이와 같은 업유의 존재를 용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조 15년(1582) 「學校事目」의 제정과 함께 유생의 분류도 다시 변화를 겪었다. 이이는 여기에서 '額內'와 '額外'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액내는 관에서 공궤하는 정원에 포함된 유생으로 장학생을 의미하며, 액외는 정원 외의 유생으로 자비 청강생을 가리킨

---

발표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儒生案으로 통칭하고, 또 향교에 소속된 학생도 儒生으로 통칭하였다.

<sup>23</sup> 『중종실록』 권88, 중종 33년 9월 30일(경자)

<sup>24</sup> 『중종실록』 중종 31년 1월 11일(정묘)

<sup>25</sup> 李文樾, 『黥齋日記』, 임자(1552) 10월 27일 병자 ; 같은 책, 계축(1553) 10월 초8일 신사 ; 같은 책, 갑인(1554) 11월 초4일 신축

<sup>26</sup> 柳希春, 『眉巖日記』 신미(1571) 【節目】

<sup>27</sup> 趙憲, 『重峯集』 권5, 「辨師誣兼論學政疏」(1586)

다.<sup>28</sup>

액내와 액외의 구분은 비슷한 시기 안동향교의 학규(1581)에서도 보인다. 이 해 안동에서는 국가에서 儒籍의 개정을 단행하여 액내 유생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는 명분하에 유생안을 개정하고, 유생의 의무와 역할을 정리하였다.

유생은 액내유생과 액외유생으로 구분하였는데, 액내유생은 立番 儒生으로 번을 나누어 거재하며, 향교에서 거행하는 朔望禮 등의 執事를 담당하였다. 이와 달리 액외 유생은 입번의 의무가 없이 社癘·城隍·祈雨·祈晴祭 등 관에서 주관하는 제례의 집사를 담당하였다. 액내 유생은 실질적인 유생으로서 문묘의 수호와 제례를 봉행하고, 액외 유생은 관에서 향교 교생에게 부과하는 역을 담당할 셈이다.<sup>29</sup> 이러한 차이는 업유와 교생을 구분하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액내와 액외를 구분하는 기준은 밝혀져 있지 않다.

광해군 12년(1620)에 작성된 예안향교의 교생안에도 액내와 액외의 구분이 있다. 액내는 예안향교의 법적 정원인 30명을 가리키며, 액외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으로서 8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액외로 등록된 8명 가운데 5명은 향안에, 4명은 도산서원 원생안에도 올라 있어서 액내와 액외가 모두 사족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0</sup>

그러나 곧이어 액내와 액외의 구분에 신분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조 4년(1656) 사헌부의 啓辭에 따르면 사족과 사족에는 미치지 못하는 '稍卑' 사이에 액내와 액외의 구분이 등장하였다.<sup>31</sup> 누가 액내가 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액내와 액외가 정원과는 무관한 신분의식에 따라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더하여 17세기 유생안에는 갈수록 다양한 항목들이 등장한다. 아래에서는 『경북향교자료집성』(199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과 『전남의 향교』(1987, 전라남도 편)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17세기 유생안의 항목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7세기 유생안의 면모를 자세히 보여주는 자료로는 진도향교의 유생안이 있다. 현전하는 유생안은 대개 17세기 후반 이후에 작성된 것이지만 진도에는 선조 39년(1606)부터 숙종 26년(1700)까지의 유생안이 남아 있다. 이 유생안은 『萬曆舊案』이라는 책으로 영조 17년(1741) 당시까지 전해지던 유생안을 등서한 것이다. 자료가 간헐적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유생안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잘 보여준다.<sup>32</sup> 이외에 진도에는 1735년에 작성된 『靑衿儒案』도 남아 있다.

<sup>28</sup> 李珥, 『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附 學校事目)

<sup>29</sup> 「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韓國古文書學會, 『古文書研究』, 109~118쪽 수록)

<sup>30</sup> 『경북향교자료집성』 II, 65쪽, 예안향교 「儒案」

<sup>31</sup> 『인조실록』 권14, 인조 4년 11월 21일(경인)

<sup>32</sup> 『전남의 향교』 782쪽, 진도향교 「萬曆舊案」

<표 1> 17세기 진도향교의 儒生案의 항목 구성(단위:명)

서기	童蒙	額內	額外	業儒	別案	靑衿	합계
1606	51	15					66
1610	29						29
1614	53						53
1616		41					41
1621	24						24
1624	19	35	8				62
1626	79	43	13				135
1633	43	33	9				85
1636	71	32	14				117
1640	48	27	9				84
1655	126	72	11	30			239
1659	100			33			133
1661	83	43	22	36			184
1666	72	48	11	53			184
1689		50			13		63
1700						21	21
1735						220	220

진도향교 유생안 작성 방식에는 두가지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새로운 항목들이 계속 생겨났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동몽과 액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인조 2년(1624)부터 액외가 등장하고, 효종 6년(1655)부터는 業儒가 추가되었다. 또 하나는 숙종 26년(1700) 이후에는 청금록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유생안은 고을마다 독자적인 원칙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항목의 구성도 달랐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여러 지역의 유생안을 보면 대개 진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액내, 액외를 중심으로 항목이 세분되다가 청금록만 남게 되는 변화가 확인된다.

항목은 액내와 액외 외에 등장하는 항목으로는 童蒙, 業儒, 校生, 別案, 別儒, 老儒 등이 있었다. 예를 들어 풍기에서는 액내-액외-업유, 비안·경산·남평에서는 액내-액외-동몽의 구분이 있었다. 이와 달리 담양과 순천에서는 上額-中額-下額의 구분이 있었다. 이들 유생안에서는 한 인물이 항목 간에 교차적으로 입력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구분의 기준은 士族과 비사족을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sup>33</sup>

그 중에는 예안처럼 사족의 항목을 나눈 경우도 있다. 예안에서는 법적인 교생 정원인 30명만을 액내로 파악하고 이를 초과하는 인원은 '별유'라는 항목으로 유생안에 포함시켰다. 효종 5년(1654) 국가가 학적을 기준으로 과거 응시를 허용한다는 정책을 강화하자 과거 응시를 위하여 사족들을 모두 유생안에게 올리려고 하였기 때문이다.<sup>34</sup>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액내에 정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사족을 포괄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액내는 정원 내라는 의미는 사라지고 향교에 소속된 사족 유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효종 5년(1654)에 반포된 정식의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정식을 기점으로 비사족층의 향교 입속 문제를 다룬 完議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종 2년(1661) 예안향교의 「校案改修修正時完議」에는 '士族과 中人을 막론하고 試講에 능하고 科擧都目을 원하는 자'를 유생안에 입록한다는 내용이 있다.<sup>35</sup> 또 효종 6년(1655) 풍기에서 작성한 '士林立議'에는 "業儒는 齋任이 될 수 없다", "額外 중 서얼은 명륜당에 오를 수 없다", "액외는 大祭 때 回文을 보내지 않는다", "서얼은 校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등과 같이 業儒, 額外, 서얼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등장한다.<sup>36</sup> 앞서 본 진도의 경우에도 효종 6년(1655)부터 業儒의 항목이 등장한다. 이 때의 유생안은 사족층이 개정을 주도하여 사족층과 비사족층을 구분하고 유생안에 신분의식을 반영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靑衿錄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7세기말 즈음에 등장한다. 청금록은 원래 성균관과 사학의 유생안을 가리켰다. 이에 비해 향교 유생 명부는 校生案, 校儒案, 校案, 儒生案, 儒案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였다.<sup>37</sup> 그러나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 이전부터 청금록을 작성하였다는 언급이 있다. 숙종 7년(1681) 李尙眞은 교생 고강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영남과 호남은 양반이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과 서얼은 액외교생이 됩니다. 호서는 중인과 서얼은 교생이 되고 양반은 청금록이라고 칭하고, 경기도 중인과 서얼이 교생이 되고 양반은 儒林이라고 칭하며, 이른바 청금록과 유림은 향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청금과 유림을 논하지 않고 영남의 액내만 考講을 한다면 공평하지

<sup>33</sup> 尹熙勉, 1990, 『朝鮮後期 鄉校研究』 일조각, 8-26쪽

<sup>34</sup>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207쪽, 예안향교 「別儒草案」

<sup>35</sup> 위와 같음

<sup>36</sup>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615쪽, 풍기향교 「雜錄」 중 「士林立議」(1655)

<sup>37</sup> 17세기 전반 향교 교생안을 『청금록』이라고 한 경우는 1610년 현풍의 사례가 유일하다. 이 책은 부제가 '玄風官校案'이라고 되어 있다. 표지가 개장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못합니다.”<sup>38</sup>

이상진이 지적한 내용은 영남·호남의 사족은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등록되어 교생 고강을 받지만 호서와 경기 사족은 각각 청금록과 유림을 칭하고, 교생과 구분되어 아예 고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상진은 불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충청도와 경기에서 각기 청금이나 유림을 칭한 것은 교생 고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책이었다.

영남에서도 일찍부터 청금록을 작성한 지역이 있었다. 현종 5년(1664) 상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교생이 ‘주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족들은 별도의 청금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과거 응시를 위하여 청금록을 과거도목을 발급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청금록은 교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강을 피하면서 과거 응시 때는 준거가 되는 특수한 명부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향교 내에서 청금유생과 교생의 임무도 다시 규정하였는데, 청금유생은 석전의 봉행만을 담당하며 교생이 향교의 호필을 담당하였다. 선조 14년(1581) 안동향교에서는 액내가 석전의 봉행과 입번을 담당하도록 하였지만 상주의 청금유생은 석전의 봉행만을 담당하여 그 의무는 더욱 축소되었다.<sup>39</sup>

청금록이 등장하는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고,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현전하는 자료를 통해서는 상주(1664), 광주(1664?), 순천(1678), 용궁(1683), 함창(1684), 담양(1687), 구례(1691), 선산(1692), 진도(1700), 남평(1701), 비안(1710), 나주(1713), 해남(1731) 등에서 靑衿案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40</sup>

## 2. 靑衿儒生과 西齋校生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유생안의 작성 추이는 담양의 사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sup>41</sup>

담양에서도 당초 「儒案」이라는 이름 하에 상액·중액·하액의 구분을 두다가 「유림안」, 「별안」 등을 작성하여 「유안」과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숙종 13년(1687)부터는 청금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청금록에도 초기에는 ‘별안’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숙종 25년(1699)을 마지막으로 이 항목이 사라진다. 대신 『청금유림안』

<sup>38</sup> 『승정원일기』 숙종 7년 8월 23일(계묘) “尙眞曰 … 嶺南·湖南 則兩班爲額內校生 中人·庶孽 爲額外校生 湖西則中人·庶孽 爲校生 而兩班則稱以靑衿錄 京畿 亦以中人·庶孽 爲校生 而兩班則稱以儒林 所謂靑衿錄及儒林者 則無所干豫於校中”

<sup>39</sup> 『경북향교자료집성』 III, 77쪽, 상주향교 「靑衿錄完議」

<sup>40</sup> 예안에서는 18세기에도 이전과 같은 액내, 별유, 액외, 교생으로 구성된 유생안을 작성하였다.

<sup>41</sup> 『전남의 향교』 375쪽, 담양향교 「儒案」

과 함께 『청금수행안』을 작성하였는데, 두 책의 수록 인물을 비교해 보면 『청금수행안』에는 『청금유림안』에 수록된 인물들 중 일부를 수록한 것을 볼 수 있다. 특정한 임무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별도로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는 향교 재임안이 나 석전제의 獻官·執事案이 별도로 남아 있는데, 『청금수행안』도 이와 유사한 명부로 보인다. 전라도 지역에는 담양 외에도 순천, 나주, 장성, 강진 등에서 수행안을 작성하였는데, 경상도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청금록이 작성된 이후부터 나타나는 변화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더 이상 액내, 액외, 업유, 동몽과 같은 구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금록 내에 항목 구분을 두었던 지역에서도 그 구분이 없어진다.<sup>42</sup> 즉, 청금록은 이전의 유생안과 달리 항목 구분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청금록이 신분적으로 동질적인 사족안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담양의 청금록은 영조 43년(1767)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 후 청금록의 작성은 중지되었고, 순조 1년(1801)부터는 齋任의 명단을 수록한 『청금별안』을 따로 작성하였다.<sup>43</sup>

18세기 말 어느 시점에서 청금록의 작성이 중단된 것은 비단 담양만의 일은 아니었다. 19세기에 들면 무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청금록이 확인되지 않는다.<sup>44</sup>

청금록의 작성이 중지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영조 49년(1773) 상주에서 왕명에 따라 儒案의 개정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해 3월 상주목사가 반포한 「儒案節目」에는 유안의 개정 원칙으로 鄉案 舊家は 모두 입록하고, 鄉外는 才行이 있으면 입록하며, '당초에 班脈이 없는 자'는 입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sup>45</sup> 여기서 '班脈이 있는 자'란 곧 양반 가의 서얼과 그 후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전해인 영조 48년 12월 경상도의 서얼 유생 黃景憲 등 3000여명이 상소하여 鄉曲通淸을 청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유생안에 通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sup>46</sup> 이 일은 영조가 鄉戰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된다.<sup>47</sup> 그러나 영조

---

<sup>42</sup> 담양의 경우 숙종 13년(1687)-숙종 25년(1699) 사이에는 '別案'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사라진다. 구례의 경우 숙종 17년(1691)-숙종 19년(1693)에는 老儒, 童蒙, 額外의 항목이 있었으나 숙종 44년(1718)-경종 1년(1721)에는 老儒라는 항목만 남았고, 이 항목도 영조 1년(1725)와 영조 8년(1732)에는 사라진다. 경상도 함창의 경우 숙종 10년(1684)과 숙종 15년(1689)에는 청금과 액내, 액외의 구분을 두었으나 이후에 사라진다.

<sup>43</sup> 『전남의 향교』 399쪽, 담양향교 「靑衿別案序」(1801)

<sup>44</sup> 무안에는 1683년, 1735년, 1740년, 1818년, 1820년, 1839년, 1888년에 작성된 청금록이 남아 있다. 이 외지역에는 1801년 담양 청금록이 현전하는 마지막 청금록이다.

<sup>45</sup> 『경북향교자료집성』Ⅲ, 81쪽, 상주향교 「儒案節目」

<sup>46</sup> 『승정원일기』 영조 48년 12월 28일(무자) ;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1월 26일(병진)

<sup>47</sup> 『영조실록』 권119, 영조 48년 12월 28일(무자)

51년(1775) 淸河에서는 「新頒教通淸案」을 새로 작성한 바 있고, 풍기에서도 향약을 새로 작성한 바 있다.<sup>48</sup> 상주 목사가 왕명을 근거로 유생안을 개정한 것도 조정의 서얼통청정책에 따른 결과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후 사족들의 별안으로 작성하던 청금록도 사라져 갔다. 서얼들은 通錄을 요구하였으나 사족들은 아예 청금록 작성을 중지해 버린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18세기에 청금록 외에 별도의 유생안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순천의 『노유안』(1699, 1702), 『별유안』(1715), 『별안』(1723), 영암의 『동몽안』(1735), 『서재유안』(1751) 등이 그것이다.<sup>49</sup> 이와 관련하여 영조 41년(1765) 전라도 관찰사가 각 고을에 보낸 「校院弊端節目」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東齋校生은 반드시 문학과 행의가 있고 사림의 명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청금록에 입록하는 것을 허락한다.

西齋儒生은 聖廟의 守直과 祭享의 執事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元額이 있으니 과다하게 정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凡民俊秀로 能文有識한 자를 선정하여 本官에 보고하고 黜陟이 생기는 대로 채우되 60세를 年限으로 한다. 60세가 되지 않으면 老除를 허락하지 않는다.”<sup>50</sup>

국가에서는 동재유생의 청금록과 서재교생의 교생안을 학적으로 파악하였다. 여기서 ‘凡民俊秀’로 지칭된 서재교생은 사족에 대비되는 비사족층으로 畵을 나누어 향교에 머무는 聖廟 守直과 제향의 집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役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이들 역시 ‘能文有識한 자’를 그 기준으로 하여 儒業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향교 내에서 사족층을 대신하여 役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사족들이 교생의 신분을 벗어나고자 청금록을 작성하는 한편 향교 교생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서도 벗어나자 그 공백을 메우는 서재교생의 존재가 부각된 것이다.

이외에 願納校生이나 老儒, 執事儒生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고 교생안에 오른 이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원납교생안, 노유안, 집사안 등의 명목이 만들어졌다.<sup>51</sup> 순천향교 등에서 보이는 다양한 명목은 이러한 정황을 반영한 것이다.

<sup>48</sup> 『경북향교자료집성』Ⅰ, 68쪽, 청하향교 「新頒教通淸案」(1775); 『경북향교자료집성』Ⅱ, 477쪽, 풍기향교 「鄉案」(1790)

<sup>49</sup> 이외에 풍기 『額案』, 영암의 『應講案』도 있다. 『액안』은 교생고강을 면제받는 액내 교생안, 『응강안』은 교생 고강에 응하는 유생의 명단이다.

<sup>50</sup> 『전남의 향교』 무안향교 「校院弊端節目」 “東齋儒生 必擇其文學行宜 蔚有士望者 始許入錄於青衿錄 西齋校生 西齋校生 所以備聖廟守直及祭享執事者也 自有元額 不可濫定 必擇其凡民俊秀能文有識者 稟報本官 隨闕充代 而以六十歲爲年限”

<sup>51</sup> 『전남의 향교』 무안향교 「校院弊端節目」; 『경북향교자료집성』Ⅰ, 492쪽, 영양향교 「校生案」(1778)

16세기 業儒와 校生の 구분에서 비롯된 향교 유생의 이원적 구성은 17세기 전반 액내와 액외의 구분을 거쳐 18세기에는 청금유생(동재유생)과 교생(서재교생)으로 이어졌다.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업유에서 청금유생에 이르기까지 사족층이 향교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교생에서 서재교생에 이르는 비사족층이 그 역할을 역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에도 소수나마 청금록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19세기 말에 작성된 것이다.<sup>52</sup> 대신 많이 보이는 자료는 西齋案이다.<sup>53</sup> 그리고, 순천향교에는 『客舍執事儒生案』, 『鄉校祭服願納儒生案』, 『水營客舍儒生案』 등 각종 執事案(1813~1881)도 남아 있다.<sup>54</sup>

19세기 서재안과 각종 집사안의 존재는 18세기 이래 서재교생과 원납교생의 존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이들이 儒生案을 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8세기에는 유생과 교생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이때는 서재는 물론 원납교생도 유생을 칭하고 있다.<sup>55</sup>

이와 관련하여 헌종 9년(1843) 구례 수령이 작성한 「鄉校西齋案」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무릇 校生은 儒生이다. … 지금부터 교생의 부자형제가 賦役(군역)에 들어가면 이 절목을 가지고 법정에 고하여 벗어난다. 밤낮으로 儒事를 익혀 東西 兩齋가 성인의 뜻을 잇는 의례로 삼는다. … 또 帳籍에는 幼學이라고 쓰면 行世는 ‘實中人’으로 처리한다. … 儒衣와 儒冠을 지키고 유생의 일에 복무하는 것을 영구히 준행한다면 천만 다행이겠다.”<sup>56</sup>

위에서 수령은 校生이 儒生이라고 지적하며 군역 면제를 공인하고, 호적에도 ‘幼學’이

<sup>52</sup> 19세기에는 무안향교(1818— 1820, 1839, 1888), 나주향교(1893), 자인향교(1881-1887)의 것이 남아 있다. 고종 21년(1884) 경상도 비안에서는 儒楔를 만들었는데, 19세기 말의 청금록이란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청금록은 일제 강점기에도 작성한 지역이 있다.

<sup>53</sup> 구례향교의 『향교서재안』(1802, 1809, 1811, 1843), 장성향교의 『서재유안』(1864), 『서재유생안』(1869), 『서재안』(1883), 창평향교의 『유안』(1822), 『향교서재안』(1830), 『서재안』(1881), 순천향교의 『향교서재유생안』(1849, 1855), 능주향교 『유생안』(1861), 『교생안』(1888) 등이 그것이다.

<sup>54</sup> 이외에 영양향교에는 『副校案』(1830, 1876)이 있고, 영천향교에는 『儒案』(1827)이 있는데, 그 성격은 분명하지 않다.

<sup>55</sup> 순천향교의 유생안 중 하나는 『鄉校祭服願納儒生案』이다. 이 유생안은 향교의 祭服을 개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한 원납교생의 명단이다.

<sup>56</sup> 『전남의 향교』 121쪽, 구례향교 「鄉校西齋案」(1843) “夫校生者 乃儒生也 … 自今爲始 校生之父子兄弟 入乎賦役者 然比(持此?節目) 齊告法廷 以爲快頓 … 而夙夜講習儒事 以爲東西兩齋 述聖之儀 … 且於帳籍 則以幼學書之 行世則以實中人處之 … 以守儒衣儒冠服儒事儒 永久遵行萬一之幸云爾”

라고 쓰고 행세는 '實中人'으로 하며, 儒服과 儒巾을 착용하고 儒事に 종사하라고 하였다. 수령이 서재생에게도 청금유생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앞선 순조 24년(1824) 구례향교에서 명륜당을 중수할 때 비용을 기부한 자들의 명단인 『幼學案』을 보면 유학이 861명이고, 교생은 26명뿐이다. 그리고, 서재생들이 '교생'으로 올라 있다.<sup>57</sup> 유학 861명도 구래의 사족층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유학 직역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례의 서재유생들은 여전히 '교생'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때에 이르러 유학 직역을 사용하고, 교생안도 유생안으로 칭함으로써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서재유생도 청금유생들과 마찬가지로 '儒生'으로 파악되기에 이르렀다.

### III. 유생안과 科擧都目

국가가 官學을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科擧都目的 발급이었다. 과거도목은 각 군현에서 작성한 과거 응시자 명단으로 赴擧都目, 擧子都目, 擧子案, 赴擧案 등으로도 일컬어 졌으며, 자료 상에서는 公文都目, 都目 등으로도 등장한다. 조선초기부터 각 고을의 수령은 과거 전에 과거도목을 작성하여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과거시험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응시자의 錄名, 곧 응시 등록을 시행하였다.<sup>59</sup> 유생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과거도목에 들지 못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과거 응시 자격은 과거도목에 의해 부여되었다.

과거도목은 최종적으로 수령이 발급하였다. 그러나 學校를 통해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일차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유생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을 것이다. 과거도목의 발급에 대하여 이이의 「학교사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대소 과거 때마다 太學은 미리 성균관의 당상이 성균관 관원과 堂長, 掌議, 有司를 명륜당에 모아 상재와 하재의 名錄과 善惡籍을 모두 취하고 평소에 보고 들은 바를 참조하여 행실에 하자가 없는 자를 가려 과거 응시를 허락한다.

사학은 學官이 각각 本學에 모여 堂長, 有司와 상의하여 위와 같이 선별한다. 외방

<sup>57</sup> 『전남의 향교』 110쪽, 구례향교 「幼學案」(1824)

<sup>58</sup> 단성호적을 분석해 보면 18세기 중반부터 호주의 직역이 유학인 유학호의 비율이 늘어나다가 19세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현전하는 『단성호적』에서 유학호의 비율은 1678년에는 5.26%에 그쳤으나 1717년-1735년에는 15% 정도로 늘어났고, 1750년에는 22.4%로 크게 늘어났고, 1780년에는 다시 27.4%로 증가하였다. 19세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25년에는 35.1%, 1846년에는 50.5%에 이르렀으며, 마지막 해인 1888년에는 83%에 올랐다.

<sup>59</sup> 『태종실록』 권33, 태종 17년 윤5월 14일(기사)

은 邑宰가 敎官, 향교 堂長, 掌議, 有司와 상의하여 위와 같이 선별한다.”<sup>60</sup>

이이가 제시한 방안은 관원이 유생 대표인 堂長, 掌議, 有司와 의논하여 학적에 기초 하되 심사를 통해 과거도목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지방 향교의 경우 수령, 교 관, 유생대표가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이미 그 이전부터 관행화되 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14년(1581) 안동향교에는 釋奠祭 때 獻官과 執事의 일을 기피하는 자들에 대하 여 향교에서 과거도목을 불허하고 수령에게 고하여 停擧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sup>61</sup> 즉 향교 내에서 도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향교 교관의 파견이 중지되었다. 대신 고을 사족 중에서 公論으 로 선임한 上齋有司나 都有司가 향교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런 구조 하에서 사족층은 유생안의 작성 뿐 아니라 과거도목의 발급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런 사례는 현종 2년(1661) 예안과 현종 5년(1664) 상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안에서는 사족과 ‘중인’을 막론하고 유생안에 등록된 자들에게는 과거도목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유생안에서 최대다수를 차지하는 別儒를 陶山書院 院錄을 참조 하여 선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상주에서는 청금록을 토대로 과거도목을 작성하였는데, 과거도목은 향교의 도유사와 道南書院의 齋任이 상의하여 수정하도록 하였다.<sup>62</sup> 과거도목의 작성은 향교의 일이지만 서원이 참여하여 이른바 사림의 공론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유생안에는 사족뿐 아니라 ‘中人’이나 ‘平人’으로 지칭된 비사족층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생안에서 額外나 童蒙, 校生 등으로 분류된 이들이다. 예안의 경우 학적에 오른 자 에게는 모두 과거도목을 발급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중인’에게도 과거 응 시가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상주의 경우 ‘허통되지 않은 서열은 과거도목을 허 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과거 응시 자격을 갖는 허통 서열의 과거 응시에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63</sup>

그런데, 예안의 사례를 보면 유생안 내에서 비사족층에 해당되는 액외와 교생의 숫자 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았다. 예안에서는 숙종 7년(1681)부터 영조 52년(1776)까지 사족층인 별유, 액내와 비사족층인 액외, 교생을 구분하여 유생안을

<sup>60</sup> 이이, 『栗谷全書』 권15, 「學校模範」(1582) “一 每大小科擧時 太學則先期 館堂上會館官及堂長, 掌議, 有司于明倫堂 盡取上下齋名錄及善惡籍 參以平日所聞見 必擇行無玷汚者 始許赴擧 四學則學官各會于本學 與堂長有司商議 鈔擇如右例 外方則邑宰與校官及鄉校, 堂長, 掌議, 有司商議 鈔擇如右例”

<sup>61</sup> 「(安東鄉校)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고문서연구』 6,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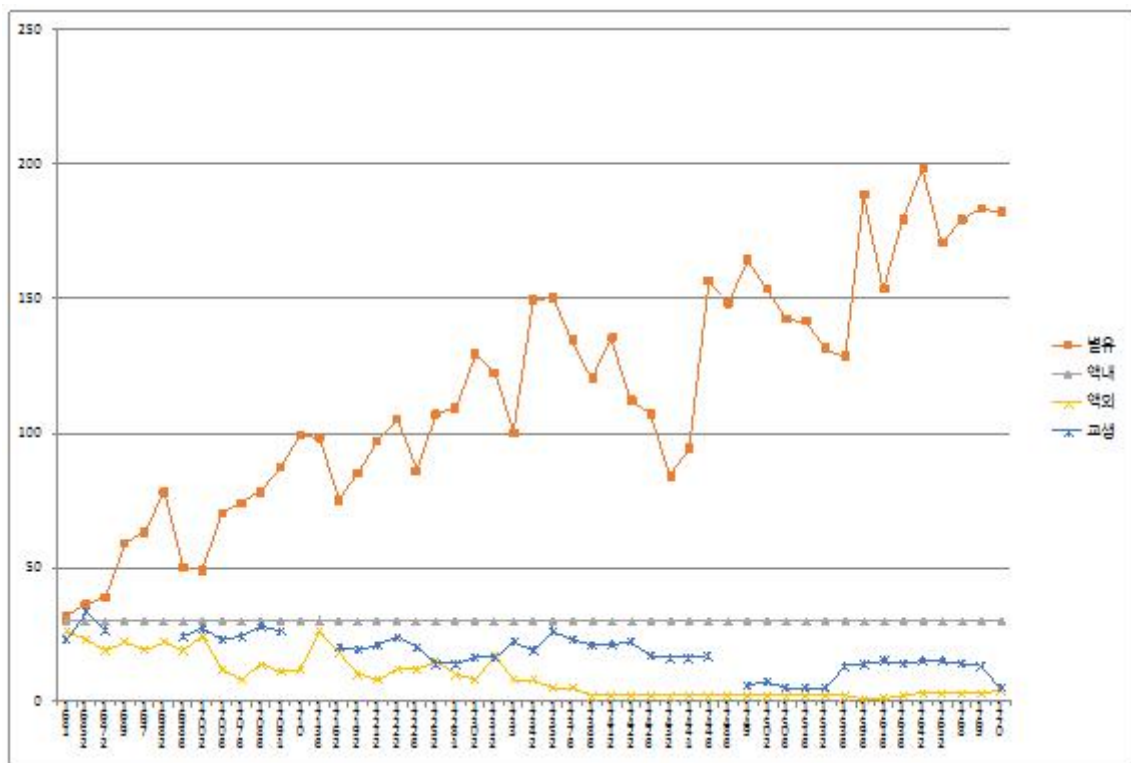
<sup>62</sup> 『경북향교자료집성』 II, 207쪽, 예안향교 「別儒草案」; 『경북향교자료집성』 III, 77쪽, 상주향교 「靑衿錄完議」

<sup>63</sup> 위와 같음.

작성하였다.<sup>64</sup> 그러나 당초부터 액외와 교생의 숫자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세였다. 비사족층이 유생안에 입록되는 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었다.

이에 비해 사족층인 별유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680년대 30-40명에 불과하던 별유의 숫자는 169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770년대에 이르면 200여명에 육박하였다. 그리고 18세기 중반부터는 새롭게 별유나 액내로 입록되는 가계들도 점차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이 액외나 교생으로부터 별유로 전화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17세기 전반 鄉案이나 院生案에 입록된 인물들의 후손들로 17세기 후반 사족층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유생안 입록에서 탈락하였다가 18세기 중엽부터 다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별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범주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림 > 예안현 유생안의 입록 인원 변화(1681-1776)



하지만 18세기 예안의 유생안과 도산서원 원생안을 비교해 보면 그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예안에서는 도산서원 원생을 중심으로 별유를 선정하였던 만큼 향교 유생과 서원 원생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었다. 18세기에도 서원 원생의 80% 이상이 유생안에 입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향교 유생 중에서 서원

<sup>64</sup> 『경북향교자료집성』 Ⅱ, 65쪽, 예안향교 「校案」 및 「儒案」



원생의 비율은 1680년대 74%에서 1770년대 24.0%로 점차 하락하였다. 원생이 아닌 향교 유생의 증가는 그만큼 과거에 응시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65</sup>

다른 지역의 청금록을 통해서도 청금유생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서 본 담양의 경우 숙종 15년(1689)에는 143명이었던 청금유생이 영조 43년(1767)에는 249명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일차적으로 과거 응시자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생의 경우는 어떠하였을까? 교생의 경우 국가에서는 避役者로 간주하고 법전 상의 교생 정원을 원액으로 삼아 증가를 억제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교생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sup>66</sup> 그러나 교생이나 교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두 과거 응시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들 중 다수에게는 군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청금유생 외에도 분명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와 전라도 남평과 능주에서 청금유생과 구분되는 赴舉儒生을 따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남평향교의 숙종 27년(1701년) 유생안에 靑衿錄(223명), 赴舉案(26명), 額內(30명), 別案(104명), 童蒙(52명)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총 435명의 명단을 수록하였다.<sup>67</sup> 그리고, 능주향교의 영조 18년(1742) 『유안』에는 청금록 243명과 赴舉 43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sup>68</sup> 그런데, 청금유생은 200여명인데 비하여 부거 유생은 각각 26명과 43명으로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만이 과거에 응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남평향교의 유생안을 보다 앞선 시기인 숙종 1년(1675)의 유생안, 숙종 11년(1685)의 『院錄』, 숙종 32년(1706)의 『院籍』과 비교해 보면 청금록이 사족안인데, 부거안에 수록된 26명은 청금록이나 『원록』, 『원적』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거유생은 비사족유생으로 과거에 응시하는 인물들을 별도의 안으로 마련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sup>69</sup>

<sup>65</sup> 박현순, 2006, 『예안현 사족사회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14-223쪽

<sup>66</sup> 『전남의 향교』 442쪽, 무안향교 「校院弊端節目」(1765) ; 『경북향교자료집성』 I, 영양향교 「校生案」(1778)

<sup>67</sup> 『전남의 향교』 221쪽, 남평향교 「儒案」(1701)

<sup>68</sup> 『전남의 향교』 283쪽, 능주향교 「壬戌五月日綾州儒案」(1742)

<sup>69</sup> 한편 순천에는 영조 2년(1726), 영조 11년(1735), 영조 33년(1757)에 『청금수행록』과 함께 별도의 『부거안』을 작성하였다. 여기에 입록된 인물의 거의 대부분도 『청금수행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극소수나마 청금록에 입록된 인물이 있고, 또 부친이 청금록에 입록된 경우나 생원·진사시 합격자, 蔭仕 출신 등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전적으로 비사족층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7세기 무안향교의 경우 유생안에서 「赴舉別」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거별안」이 청금록에 해당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두 사례의 경우는 이 지역의 유생안 작성 관행과 더불어 보다 세밀하게 고찰해 봐야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부거안과 함께 검토해 볼 것이 養士齋의 문제다. 양사재는 각 고을에서 고을 유생들의 과거 준비를 위해 마련한 서재로 기간을 정해 놓고 居接을 개최하였다. 자료 상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는 현종 4년(1663) 남평향교의 양사재이다. 이 양사재는 현종 4년 수령 沈某가 校生の 願納을 받아 堂을 건립하고, 재정을 마련하여 식년시와 별과 때 居接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 完議에서는 특별히 교생의 원납으로 건물이 완성되었음을 밝히고 교생배를 침책하는 일이 있으면 多士들이 나서서 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70</sup> 이어 숙종 1년(1675) 수령이 작성한 完議에는 童蒙의 원납으로 거접 비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동몽의 잡역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sup>71</sup> 즉, 이 양사재는 교생이 건물을, 동몽이 유지비를 마련하여 설립한 것인데, 수령은 이들을 齋生이라고 칭하고 있다. 양사재를 설립하고 거접 비용을 마련하여 거접하는 유생들은 교생과 동몽이었던 것이다.

이어 숙종 24년(1698)에는 남평에서 興學生을 두었다. 남평의 제도는 화순의 제도보다 보다 체계적이다. 먼저 각면에서 서당을 건립하고 面(里)訓長과 都訓長을 두어 매 달 삭망에는 면훈장이 서당에서 강경과 제술을 시행하고, 매년 4맹삭에는 도훈장이 향교에서 수령과 함께 강경과 제술을 시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을 차원에서는 明師 1인을 두고 冠者, 즉 성인 남성 30명을 뽑아 상시적으로 수업을 하며 향교의 각종 제례를 봉행하게 하였다. 이들이 서재교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齋生은 門闕과 尊卑를 따지지 않고 舞勺之年부터 知命, 곧 15세 즈음부터 50세까지 모두 입학할 허락하고, 균역을 면제시키도록 하였다. 이 때의 재생 역시 사족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sup>72</sup>

재정은 매년 願納으로 마련하였는데, 숙종 27년(1701) 원납자는 유학 5명, 교생 9명, 동몽 24명 등 총 38명으로 되어 있다. 이를 같은 해 남평 유생안과 비교해보면 유학 5명 중 2명은 부거안, 1명은 액내, 교생 9명 중 2명은 별안, 1명은 액내에 수록되어 있다. 이해의 청금안에는 모두 223명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 중 기부를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즉, 흥학생의 중심은 남평 사족이 아니었다. 나아가 흥학생은 숙종 37년(1711) 軍役 모피자라는 이유로 혁파되었고, '俊秀'들은 향교에 입속되었다.<sup>73</sup> 하지만 현전하는 『學案』을 통하여 흥학생이 곧 부활된 것을 알 수 있다. 순조 6년(1806)에는 興學堂을 중수했다는 기록도 있다.<sup>74</sup>

18세기에 능주향교에서도 양사재를 건립하였다. 이 곳에서는 숙종 46년(1720)부터 매

<sup>70</sup> 『전남의 향교』 960쪽, 화순향교 「養士齋完議」(1663)

<sup>71</sup> 『전남의 향교』 956쪽, 화순향교 「完議」(1675)

<sup>72</sup> 『전남의 향교』 254쪽, 남평향교 「學案」

<sup>73</sup> 『전남의 향교』 258쪽, 남평향교 「辛卯七月日節目」(1711)

<sup>74</sup> 『전남의 향교』 268쪽, 남평향교 「興學堂重修記」(1806)

년 白日場을 개최하고 30명을 선발하여 양사재에서 거접하게 하였다.<sup>75</sup> 건립과 운영 비용은 역시 기부를 받았는데, 전체 기부자 772명 가운데 352명은 '西齋'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사족층에 대하여 비사족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을 禮米儒生이라고 칭하며 先生案에 올려 그 후손에게도 백일장을 거쳐 거접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능주향교에는 영조 17년(1741)부터 1908년까지의 거접 기록인 「養士齋井間案」이 남아 있어서 19세기까지도 거접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76</sup>

능주에서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조 3년(1779)는 양사재와 별도로 元接廳을 건립하였는데, 그 재정 마련 및 운영 방식은 양사재와 동일하였으며, 西養士齋로도 불렸다.<sup>77</sup> 그리고 순조 13년(1813)에는 건물을 중수하였는데, 이 때 건립 비용을 기부한 사람은 1,200여명이었다. 원접청의 정간안도 정조 4년(1780)부터 고종 32년(1895)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모두 사족층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단 고을 단위에서만 비사족층의 교육을 지원한 것은 아니다. 영조 17년(1745) 전라 감사가 내린 권학절목에는 도훈장과 면훈장을 선임하여 정례적인 강학을 시행하되 유생은 門地를 따지지 말고 재주와 의지를 있는 자를 가려 뽑도록 하였다.<sup>78</sup>

이러한 규정은 앞서 경상감사 趙顯命이 제정한 권학절목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조현명은 도훈장과 면훈장을 두고, 사족 몇 명을 뽑아 거재유생으로 삼고 각면에서는 士族과 中庶를 막론하고 강학을 시행하도록 하였다.<sup>79</sup> 그리고 조현명은 趙泰億이 경상감영에 설립한 樂育齋를 중수하고 각 고을에서 추천한 유생들을 거재하게 하였는데,<sup>80</sup> 전라도에서는 전라도 감영에서는 希願堂을 설치하여 강학소로 활용하였다.<sup>81</sup>

양사재는 지역공동체에서 마련한 일종의 學契이다. 양사재에는 사족층들도 참여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층이 원납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였고, 관의 보호를 받으며 교육 기회를 제공받았다. 물론 양사재는 백일장이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인원의 과거 응시를 지원하는 2차적 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양사재가 있더라도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마을에는 서당 설립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집안이라면 서당과 백일장, 양사재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 양사재는 구래의 사족이 장악한 청금록이나 서재교생의 인원 제한을 넘어 향교 외곽에서 '凡民俊秀'로 일컬어지는 비사족층이 유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sup>75</sup> 『전남의 향교』 307쪽, 능주향교 「養士齋案」(1719-1720)

<sup>76</sup> 『전남의 향교』 331쪽, 능주향교 「養士齋井間案」(1741-1908)

<sup>77</sup> 『전남의 향교』 332쪽, 능주향교 「元接廳儒案」(1779)

<sup>78</sup> 『전남의 향교』 125쪽, 구례향교 「巡使道勸學別關節目」(1745)

<sup>79</sup> 조현명의 권학절목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대식, 2007, 「歸鹿 趙顯命의 訓長制 시행과 그 변용」 『한국교육사학』 29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sup>80</sup> 趙顯命, 『歸鹿集』 권19, 「通諭道內士友文」

<sup>81</sup> 『전남의 향교』 288쪽, 능주향교 「咸豐元年○月日 綾州牧儒生興學節目」

되었다.

앞의 구례향교의 사례에서 보듯 서재 교생이 향교의 역을 담당하며 여전히 교생을 칭하던 시기에도 양사재 유생들은 '유학'을 칭하였다.<sup>82</sup> 정조대 집의 申禹相은 과거 응시자들이 늘어나 科場이 문란해지는 이유를 농민의 자식들과 면천 노비들이 '유학'을 冒稱하고 과장에 드나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sup>83</sup> 농민의 자식들이란 바로 사족도 아니고 서재교생도 아니면서 유학을 칭하는 이런 부류들을 일컫는 것일 것이다.

조선후기 과거 응시 자격은 學籍에 의해 부여되었으며, 17세기 말 이후의 기준은 청금록이었다. 그렇다면 청금록 작성이 중지되었을 때 과거 응시 자격은 어떻게 부여되었을까?

여전히 각 고을에서는 과거도목을 작성하여 試所에 보냈다. 그러나 각 고을에서 무엇을 근거로 도목을 작성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서원 원생안과 같은 전통적인 사족 중심의 명부가 근거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풍기의 사례를 보면 18세기 이래 향교와 관내의 서원에서 꾸준히 居接과 白日場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청금 유생의 폭이 확대되고 있었던 만큼 그 참여 폭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居接이나 고을에서 시행하는 백일장 등 향교 외의 교육체계가 과거도목 발급의 주요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정조대에는 과거 응시 자격에 관련된 중요한 제도 변화도 있었다. 국가에서 照訖講의 시행을 강화하는 한편 각읍 수령이 조흘강을 주관하게 한 것이다. 조흘강은 생원·진사시 초시 응시 전에 응시 가부를 결정하는 시험으로 인조대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정조 15년(1791) 응시자가 과도하게 많고 이로 인해 과장 관리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조흘강의 시행을 강화하였다.<sup>84</sup> 그리고 정조 18년(1794)에는 그 방법의 하나로 각관에서 조흘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성책하여 試官에게 보내도록 하였다.<sup>85</sup> 이에 따라 각관의 조흘성책이 과거도목으로 활용되게 되었다. 이 내용은 순조 18년(1818) 비변사의 科場掾弊節目에도 포함되어 있다.<sup>86</sup>

이 제도는 조흘강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각 고을에서 양사재, 백일장, 거접 등을 통해 擧業에 종사하는 자들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관이 이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때부터 각 고을에서는 照訖帖을 목판으로 새겨 발급하였는데, 현재 空名帖도 전해지고 있다. 당초의 의도와 달리 조흘강의 각 고을 이관은 과거 응시를 보다 수월하게 만드는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

<sup>82</sup> 『전남의 향교』 110쪽, 구례향교 「幼學案」

<sup>83</sup> 『정조실록』 권47, 정조 21년 10월 12일(정미)

<sup>84</sup> 『정조실록』 권33, 정조 15년 8월 13일(을묘)

<sup>85</sup>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2월 23일(신사)

<sup>86</sup> 『순조실록』 권21, 순조 18년 5월 29일(병인)

## 맺음말

조선에서는 학교를 통하여 과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중종대까지는 주로 관학의 거재일수를 확인하는 圓點이나 학습 내용을 점검하는 書徒를 통해 응시 자격을 부여한 반면 명종대 이후에는 수학보다는 學籍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예비시험인 照訖講을 학력 수준을 평가하여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반드시 학교에서 수학하지 않더라도 학적을 유지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학의 학생은 사족층이 대두된 16세기 이래로 신분의식의 반영하여 다원화되었다. 16세기 중반에는 사족자제인 業儒와 校生の 구분이 있었고, 신분의식이 강화된 17세기에는 사족층이 儒生案의 작성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생안 내에서도 사족층과 비사족층, 곧 액내와 액외의 구분을 두었고, 지역에 따라 業儒, 童蒙, 校生, 別儒, 別案 등으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7세기 말에는 사족층이 별도의 청금록을 작성하며, 유생안이 사족층의 청금록과 향교 서재 교생안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18세기 말 조정에서 서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儒生案에 서얼을 通錄하도록 결정하면서 청금록은 사라져 갔다. 대신 사족층을 대신하여 향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한 서재교생안과 각종 집사안이 만들어 졌고, 19세기 즈음에는 이들도 유생으로 자처하였다.

과거 응시 자격은 행정적으로 과거도목의 발급을 통해 부여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생안 작성을 주도하는 사족층이 과거도목 발급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유생안에 수록된 사족층이나 청금록의 인적 구성은 구래의 범주를 넘어 그 외연이 점점 확대되었다. 이것이 과거 응시자의 증가와 응시 계층의 확대를 가져온 일차적인 원인이었다고 본다.

또한 사실 상 교육 기능을 상실한 향교 외곽에 설립된 養士齋나 居接, 白日場 등의 새로운 교육체계도 보다 넓은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비록 공식적으로 官學에 소속된 유생은 아니었지만 '幼學'을 칭하며 과거 응시 계층으로 진입하였다. 이를 통하여 19세기에 과거 응시자층의 폭발적인 확대와 응시자 수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